



충청북도
www.cb21.net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도 보

선	기관의 장
람	

제2361호 2005년 7월 1일 (금)

조 례

- 충청북도조례 제2865호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3
- 충청북도조례 제2866호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6
- 충청북도조례 제2867호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11

고 시

- 충청북도고시 제2005-76호 2005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고시··· 14

공 고

- 충청북도공고 제2005-267호 정보통신공사업등록공고····· 21
- 충청북도공고 제2005-268호 정보통신공사업등록공고····· 21
- 충청북도공고 제2005-269호 측량업폐업공고····· 22

지방행정

△ 고 시

- 청원군고시 제2005-45호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
계획)결정고시····· 23
- 청원군고시 제2005-47호 도로의구역결정(변경)고시····· 25
- 괴산군고시 제2005-2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26

회
람

지방행정

△ 고 시

괴산군고시 제2005-29호 도시계획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실시
계획인가고시..... 28

단양군고시 제2005-18호 단양군도시계획시설(체육:클레이사격장)결정및
지형도면고시..... 30

△ 공 고

청주시공고 제2005-457호 폐기공인공고..... 32

옥천군보건소공고 제2005-2호 2005년도한방진료의약품구매택찰공고..... 33

음성군공고 제2005-353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
열람공고..... 35

기 타

충청북도교육청고시 제2005-3호 2005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고시..... 36

충청북도교육청공고 제2005-105호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3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5-87호 도로사용개시(폐지)에관한공고..... 45

조 례

◎ 충청북도조례 제2865호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와 충청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5년 7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한다.

제1조중 “충청북도교육감”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으로 한다.

제3조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충청북도교육감</u> 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준용)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u>공무원여비규정</u>을 준용한다.</p>	<p><u>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u></p> <p>제1조(목적) <u>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u></p> <p>.</p> <p>제3조(준용) 「<u>공무원여비규정</u>」</p>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여비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여비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제명 및 목적에 충청북도교육위원회를 추가함.(제1조)

◎ 충청북도조례 제2866호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와 충청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5년 7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한다.

제1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육박물관, 한글사랑관, 안전체험관 운영

제6절을 제7절로, 제23조 내지 제25조를 제26조 내지 제28조로 하고, 제6절(제23조 내지 제2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제23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등 학생 및 교원들에게 체험활동 중심의 외국어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부여, 국제문화 이해 능력 증진, 개인별 국외 어학연수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외국어교육의 효율성 확보로 충북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이하 “외국어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외국어교육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118번지에 둔다.

제24조(원장) 외국어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업무) 외국어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외국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어 교육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4조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한다.

제20조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절 충청북도학생회관	제4절 충청북도학생회관
제19조(업무) (생략)	제19조(업무) (현행과 같음)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교육박물관, 한글사랑관, 안전체험관 운영
<신 설>	제6절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신 설>	제23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 하여 초·중등 학생 및 교원들에게 체 험활동 중심의 외국어 교육환경을 조성 하여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 감 부여, 국제문화 이해 능력 증진, 개 인별 국외 어학연수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외국어교육의 효율성 확보로 충 북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청 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이하 “외국어교 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 설>	② 외국어교육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 백면 은탄리 118번지에 둔다.
<신 설>	제24조(원장) 외국어교육원에 원장을 두 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 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 독한다.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제6절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p> <p>제23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계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에게 첨단산업 기자재의 실습을 통하여 교수·학습능력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를 둔다.</p> <p>② 공동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p> <p>제24조(소장) 공동실습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25조(업무) 공동실습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산업기계 공동실습교육 2. 실업계 교원의 농업 또는 공업관련 특별연수 3. 기타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수 및 교육활동 	<p>제25조(업무) 외국어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외국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어 교육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 <p>제7절 (현행 제6절과 같음)</p> <p>제26조(설치) (현행 제23조와 같음)</p> <p>제27조(소장) (현행 제24조와 같음)</p> <p>제28조(업무) (현행 제25조와 같음)</p>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 학생들에게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부여 및 국제문화 이해 능력 증진을 도모하고, 개인별 국의 및 어학연수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외국어교육의 효율성 확보로 충북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본청 직속기관으로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설치하고,
- 현재 학생회관에 증축하고 있는 교육박물관 및 안전체험관과 학생회관으로 이전되는 한글사랑관의 운영 주체를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충청북도학생회관의 업무에 교육박물관, 한글사랑관, 안전체험관 운영을 추가(제19조)
- 나.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신설하여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118번지」에 둠(제23조)
- 다. 외국어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소관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 라. 외국어교육원장은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활동 계획 및 조정과 외국어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 충청북도조례 제2867호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와 충청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5년 7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결원된 날부터 20일이내에”를 삭제하고, 동항 단서중 “잔여임기가 3월미만”을 “잔여임기가 6월미만”으로 한다.

제1조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위원의 선출등) ① (생략)</p> <p>②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3조(위원의 선출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p> <p>-----</p> <p>잔여임기가 6월미만-----</p> <p>-----</p> <p>-----</p> <p>③ (현행과 같음)</p>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그동안 보궐선출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주로 자녀의 졸업에 따른 자격상실로 보궐선출이 이루어지는 바, 선출시기가 동계휴가기간으로 홍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으로서 신입생 학부모가 배제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궐선출 기한을 삭제함 (제3조)
- 나.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잔여임기가 3월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임기가 너무 짧아 보궐선출에 입후보를 꺼리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6월미만 남은 경우로 함(제3조)

고 시

◎ 충청북도고시 제2005-76호

2005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고시

2005년 6월 22일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7월 1일
충청북도지사

1. 일반회계

(세입)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계	1,470,446,508	1,314,189,718	156,256,790
지방세	334,540,000	334,540,000	0
세외수입	134,063,685	59,245,193	74,818,492
경상적세외수입	19,833,320	19,547,139	286,181
재산임대수입	273,565	272,964	601
사용료수입	4,074,360	3,788,780	285,580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수수료수입	1,976,051	1,976,051	0
	사업수입	620,338	620,338	0
	징수교부금수입	4,354,006	4,354,006	0
	이자수입	8,535,000	8,535,000	0
	임시적세외수입	114,230,365	39,698,054	74,532,311
	재산매각수입	6,205,534	2,455,534	3,750,000
	순세계잉여금	82,508,186	20,000,000	62,508,186
	이월금	342,218	0	342,218
	용자금원금수입	3,000,000	3,000,000	0
	부담금	11,371,460	9,370,840	2,000,620
	잡수입	10,727,967	4,796,680	5,931,287
	과년도수입	75,000	75,000	0
	지방교부세	341,568,974	323,392,720	18,176,254
	지방양여금	0	0	0
	보조금	649,273,849	597,011,805	52,262,044
	지방채	11,000,000	0	11,000,000

(세출)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계	1,470,446,508	1,314,189,718	156,256,790
○ 일반행정비	216,469,846	202,569,476	13,900,370
○ 사회개발비	490,880,938	431,377,501	59,503,437
○ 경제개발비	551,653,281	482,747,227	68,906,054
○ 민방위비	63,805,060	61,229,294	2,575,766
○ 지원및기타경비	147,637,383	136,266,220	11,371,163

2. 특별회계

가. 공기업특별회계

(1)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수입)

(단위: 천원)

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계	306,651,399	285,426,972	21,224,427
지역개발기금사업수입	14,557,797	14,557,797	0
자본적수입	78,239,175	78,239,175	0
이월금	213,854,427	192,630,000	21,224,427

(지출)

(단위: 천원)

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계	306,651,399	285,426,972	21,224,427
사업예산	15,367,672	15,367,672	0
자본예산	291,283,727	270,059,300	21,224,427

(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수입)

(단위: 천원)

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계	24,228,022	17,958,509	6,269,513
공영개발사업수입	7,290,295	7,290,295	0
자본적수입	0	0	0
이월금등	16,937,727	10,668,214	6,269,513

(지출)

(단위: 천원)

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계	24,228,022	17,958,509	6,269,513
사업예산	130,053	130,053	0
자본예산	24,097,969	17,828,456	6,269,513

나. 기타특별회계

(1) 충북과학대학운영

(수입)

(단위: 천원)

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계	10,072,329	5,432,842	4,639,487
세외수입	10,072,329	5,432,842	4,639,487
보조금	0	0	0

(지출)

(단위: 천원)

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계	10,072,329	5,432,842	4,639,487
경상예산	4,298,676	4,182,487	116,189
사업예산	5,171,482	1,065,567	4,105,915
예비비등	602,171	184,788	417,383

(2) 의료급여기금운영

(수입)

(단위: 천원)

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계	105,464,223	101,724,498	3,739,725
세외수입	22,437,728	21,032,798	1,404,930
보조금	83,026,495	80,691,700	2,334,795

(지출)

(단위: 천원)

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계	105,464,223	101,724,498	3,739,725
경상예산	13,920	8,920	5,000
사업예산	103,757,947	100,030,222	3,727,725
예비비	1,692,356	1,685,356	7,000

(3) 농어촌개발기금운영

(수입)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계	14,067,000	6,278,353	7,788,647
세외수입	14,067,000	6,278,353	7,788,647

(지출)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계	14,067,000	6,278,353	7,788,647
사업예산	14,067,000	6,278,353	7,788,647

(4)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

(수입)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계	0	19,333,324	-19,333,324
세외수입	0	19,333,324	-19,333,324

(지출)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계	19,333,324	19,333,324	0
사업예산	19,333,324	19,333,324	0

(5)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단위: 천원)

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계	4,478,872	4,438,000	40,872
세외수입	4,478,872	4,438,000	40,872

(지출)

(단위: 천원)

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계	4,478,872	4,438,000	40,872
사업예산	4,478,872	4,438,000	40,872

공 고

◎ 충청북도공고 제2005-267호

정보통신공사업등록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1일
충청북도지사

등록업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비 고
정보통신공사업 (제430019호)	중앙전자 대표 : 김중복 (470225-1*****)	충북 충주시 봉방동 8-50번지	2005.6.22	신규등록
정보통신공사업 (제430020호)	(주)이엔씨테크 대표 : 이종희 (150111-0060420)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314-3 황금빌딩 3층	2005.6.22	신규등록

◎ 충청북도공고 제2005-267호

정보통신공사업등록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1일
충청북도지사

등록업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비 고
정보통신공사업 (제430021호)	(주)우진산전 대표 : 김영창 (110111-0423741)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산64-3번지	2005.6.27	신규등록

◎ 충청북도공고 제2005-269호

측량업폐업공고

측량법 제4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을 다음과 같이 폐업하였기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1일
충청북도지사

상호(대표자)	(주)하나엔지니어링 (조창희)
업종(등록번호)	일반측량업 (제04-2364호.)
소재지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16-2
폐업일자	2005. 5. 31
폐업사유	자진폐업

지 방 행 정

◎ 청원군고시 제2005-45호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1. 청원군 오창면 용두리 116-13번지 일원에 대한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산업형)) 결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6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하고, 동법 제32조5항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고시로써 지형도면고시를 갈음합니다.
2. 관계도서를 청원군청 개발과(☎251-343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7월 1일
청 원 군 수

1. 목 적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산업형) 수립
2. 위 치 : 청원군 오창면 용두리 116-13번지 일원
3. 사업규모
 - 사업체 : (주)행성화학, 행성상사, (주)정다운, 넥스테크21, 일성화학
 - 면 적 : 86,625㎡

구 분	면 적 (㎡)					계(㎡)	합계(㎡)	구성비 (%)
	(주)행성화학	행성상사	(주)정다운	넥스테크21	일성화학			
공업 용지	건축면적	5,981	10,030.00	6,000.00	2,500.00	3,200.00	27,711.88	53,442.00 61.69
	기타공지	7,481.12	7,047.00	6,162.00	3,477.00	1,563.00	25,730.12	
계	13,463.00	17,077.00	12,162.00	5,977.00	4,763.00	53,442.00		
공공 시설 용지	도 로	2,408.00	1,473.00	1,838.00	1,120.00	-	6,839.00	9,531.00 11.01
	운동시설	-	296.00	2,396.00	-	-	2,692.00	
계	2,408.00	1,769.00	4,234.00	1,120.00	0	9,531.00		
녹지 용지	조경녹지	2,627.00	2,171.00	2,810.00	1,518.00	636.00	9,762.00	23,652.00 27.30
	법면녹지	-	8,090.00	3,413.00	-	2,387.00	13,890.00	
계	2,627.00	10,261	6,223.00	1,518.00	3,023.00	23,652.00		
합 계							86,625	100

4.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결정사유
신설	군관리계획 결정도	용두지구 (산업형)	청원군 오창면 용두리 116-13번지 일원	86,625	교통의 중심지인 청원군에 공장을 건립하여 유통비용 절감 및 신기술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 여 공장부지를 조성

○ 가구 및 획지(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획지 (구획된 일단의 토지)	위치	면적(m ²)	비율
개발 및 보전계획도	공업용지	오창면 용두리 116-13번지 일원	53,442.00	61.69
	공공시설용지	오창면 용두리 116번지 일원	9,531.00	11.01
	녹지용지	오창면 용두리 산4-1번지 일원	23,652.00	27.30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획지 (구획된 일단의 토지)	구분	계획내용
건축물 배치계획도	공업용지	용도	· 지정용도 : 공장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용적률	120%
		높이	3층 이하
		배치	건축물 배치 계획도 참고 (권장)
	공공시설용지	용도	· 지정용도 : 도로,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공공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용적률	120%
		높이	3층 이하
	녹지용지	용도	· 지정용도 : 녹지(조경, 법면녹지) 및 조경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5.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 : 도보게재 생략

◎ 청원군고시 제2005-47호

도로의구역결정(변경)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7월 1일
청 원 군 수

1. 도로의 구역결정 내용

종 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이 유
군도	동림~여천 (22호선)	시점 : 청원군 옥산면 국사리 280(답) 종점 : 청원군 옥산면 국사리 871(도)	1.34	국사	동림 - 여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 도로구역(변경) 결정 함
군도	수곡~지산 (7호선)	시점 : 청원군 낭성면 지산리 304(임) 종점 : 청원군 낭성면 지산리 447(답)	1.13	지산	수곡 - 지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 도로구역(변경) 결정 함

2. 사업시행기간 : 2005. 7 ~ 2007. 12. 30

3. 열람장소 : 청원군 건설과(전화 043-251~3155)

(설계도서 및 편입용지조서, 사업시행 기간내 열람)

◎ 괴산군고시 제2005-2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괴산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및 충청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7월 1일
괴 산 군 수

다 음

1. 도시계획사업현황 (변경없음)
 - 가. 사업명 : 청천선평교~파출소간 도로개설공사
 - 나. 위치 :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일원
 - 다. 명칭 : 종로 2-1호
 - 라. 사업량 : L=400m, B=15m
2.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 가.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125
 - 나. 성명 : 괴산군수 김문배
3.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05.12.31 (변경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면적,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변경)
5. 관계도서는 괴산군청 건설과(☎043-830-325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당초)

<청천선평교-파출소간도로개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의외의 권리자	
	읍면	리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23	청천	청천	56-43	잡종지	126	청원군 마원면 마원리 205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97-7	변승희 이현부		
24	"	"	56-10	잡종지	44			이현부지분 주택사업공제조합(대전지점) 충북은행(청주시직지점) 청주세무서 청주홍덕구청 조흥은행(충북본부)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 대한민국 노동부 ㈜정리금융공사(서울 중구 다동 33 최선희(괴산군 문광 유흥 183)	
25	"	"	56-45	잡종지	96				
26	"	"	56-46	잡종지	18				
27	"	"	56-44	잡종지	16				
28	"	"	56-16	잡종지	15				

■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변경)

<청천선평교-파출소간도로개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의외의 권리자	
	읍면	리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23	청천	청천	56-43	잡종지	126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125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97-7	괴산군 이현부	이현부 지분 ① 청주시 상당구 영동 86-3(사적동지점) 충북은행 (대전지점)주택사업공제조합 ③ 국 청주세무서 ④ 청주시 홍덕구 청주시홍덕구청 ⑤ 서울 중구 남대문로17114(충북본부) 주식회사 조흥은행 ⑥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657-3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⑦ 대한민국 노동부 ⑧ 괴산군 괴산읍서부리 125 괴산군 ⑨ 서울 중구 다동33주식회사정리금융공사 ⑩ 청주시 청주시 ⑪ 서울 중구 남대문로5716-1(청주지사) 한국주택 금융공사 ⑫ 괴산군 문광면 유흥리 183 최선희	
24	"	"	56-10	잡종지	44	"	"		
25	"	"	56-45	잡종지	96	"	"		
26	"	"	56-46	잡종지	18	"	"		
27	"	"	56-44	잡종지	16	"	"		
28	"	"	56-16	잡종지	15	"	"		

◎ 괴산군고시 제2005-29호

도시계획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괴산군 도시계획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5년 7월 1일
괴 산 군 수

다 음

1. 도시계획사업현황

- 가. 사업명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 나. 위치 :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38-3번지 일원
- 다. 면적 : 4,253 m²,
- 라. 사업현황 : - 사업비 : 6,885백만원
- 사업량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1식(60톤/일)

2.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가.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125번지
- 나. 성명 : 괴산군수 김문배

3.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07.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비 고
	읍면	리동					주 소	성 명	
1	괴산	대덕	38-2	천	369	369	괴산을 재월리 330	강순석	
2		대덕	38-11	답	14	14	괴산을 사창리 501	신덕균외2인	
3		대덕	38-10	답	16	16	괴산을 서부리 125	괴산군	
4		대덕	38-5	답	956	956	괴산을 사창리 501	신덕균외2인	
5		대덕	38-6	답	62	62	괴산을 사창리 501	신덕균외2인	
6		대덕	38-9	구	17	17	괴산을 사창리 501	신덕균외2인	
7		대덕	38-8	구	22	22	괴산을 사창리 501	신덕균외2인	
8		대덕	507-2	구	19,814	189		농림수산부	
9		대덕	36-1	구	225	166	괴산을 서부리 125	괴산군	
10		대덕	36	답	1,624	497	괴산을 동부리 493	황정일	
11		대덕	38-3	답	953	953	서울 강동구 성내동 142-11	박금자	
12		대덕	38-4	답	992	992	서울 강동구 성내동 142-11	박금자	
소		계			25,064	4,253			

5. 기타 관련서류는 괴산군청 건설과(830-3357)에 비치함

◎ 단양군고시 제2005-18호

단양군도시계획시설(체육:클레이사격장)결정및지형도면고시

단양군 단양읍 기촌리 342번지 일원 도시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클레이사격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신규)하고 또한 동법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7월 1일
단 양 군 수

1. 단양군도시관리계획(체육:클레이사격장)결정(신규)조서 : 붙임
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및 지형고시도면 : 실음생략
3. 관계도서는 단양군청 건설과 지역계획담당(☎420-319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단양군도시관리계획(체육:클레이사격장)결정(신규)조서

1.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클레이사격장)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체육시설	클레이사 격장	· 단양군 단양읍 기촌리 342	-	증29,400	29,400	-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클레이사격장	· 신설 · 위치 : 단양군 단양읍 기촌리 342일원 · 면적 : 29,400㎡	· 도민체전 및 전국단위 대회 유치를 위하여 단양군민의 레저스포 츠공간을 제공하고자 체육시설(사격장)로 군관리계획 결정

3. 세부시설 결정조서

구 분	시 설 명		부지 면적	건축면적(㎡)		비 고
	관리번호	명 칭		바닥면적	연 면 적	
계	-	-	29,400	273.92	345.62	
사 격 장	1	소 계	10,730	21.5	21.5	
	-1	하이 하우스		5	5	지상1층
	-2	로우 하우스		4	4	지상1층
	-3	콘트롤하우스		6.25	6.25	지상1층
	-4	콘트롤하우스		6.25	6.25	지상1층
관 리 시 설	-	소 계	4,160	252.42	324.12	
	2	관 리 등	1,290	252.42	324.12	
	3	광 장	770	-	-	
	4	주 차 장	780	-	-	
	5	도 로	1,320	-	-	
편 의 시 설	-	소 계	2,630			
	6	다목적광장	1,940			
	7	조경휴게지	690			
녹 지		녹 지	11,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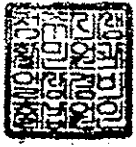
◎ 청주시공고 제2005-457호

폐기공인공고

청주시공인조례 제11조에 의거 폐기하는 공인을 청주시 공인조례제1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1일
청 주 시 장 인

1. 폐기일자 : 2005. 7. 1.
2. 폐기사유 : 생활민원과 폐지
3. 공인명 및 인영내역

폐 기 공 인 명	인 영
<p>청주시생활민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p>	

◎ 옥천군보건소 공고 제2005-2호

2005년도 한방진료의약품구매입찰공고

2005년 7월 1일
옥천군보건소 경리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건명 : 2005년도 한방진료의약품(보건소·보건지소) 구매
- 나. 입찰품목 : 보건복지부고시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한방의약품 47종
- 다. 연간구매예정금액 : 약 60,000천원정도
- 라. 입찰방법
 - 충청북도 도보 및 옥천군 홈페이지(<http://www.oc.go.kr/>)에 공고

2. 등록마감 및 현품설명 일시

- 가. 등록개시일시 : 2005. 07. 08 (금) 10:00
- 나. 등록마감일시 : 2005. 07. 15 (금) 13:30
- 다. 현품설명일시 : 2005. 07. 15 (금) 13:40
- 라. 입찰 일시 : 2005. 07. 15 (금) 14:30(옥천군보건소 2층 회의실)

3. 입찰참가 자격

-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나. 약사법 제35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내에 의약품 도매허가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를 받은 충청지역에 소재한 업체
- 다. 우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제도에 의한 적격업소 지정된 업체
- 라. 입찰 설명에 참가하고 소정의 입찰 등록을 필한 자.
- 마. 우리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등록 서류

-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나. 사업자등록증 및 의약품(한방의약품)판매업허가증 사본 각1부
- 다. 우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적격업소 지정서류(증명서) 사본 1부
- 라.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마. 입찰참가수수료 : 옥천군수입증지 10,000원 첨부
- 바.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 각1부
- 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아. 약사면허증 사본 1부

5. 입찰 및 낙찰방법

-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5호)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8호) 제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단, 신인도 평가는 제외)
- 나. 지역제한(충청북도에 한함) 일반경쟁에 의한 2005년도 의료보험적용 “처방별기준가격표”중 한방진료 의약품(47종) 가격대비 예정가격 이하중 별첨 목록 의약품 전체에 대해 적용할 최저비율 낙찰방법에 의하여 낙찰합니다.
- 다. 동일가율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현장에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5(5%)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옥천군 물품구매(제조)계약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 현장입찰은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된 업체에 한합니다.
- 다. 입찰서는 현장입찰 당일 현장에서 교부하며 입찰서 작성 및 수령에 관한 권한은 입찰등록서를 지참한 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라. 입찰서 제출 시 봉인은 상·중·하에 날인하되 입찰 등록 시 사용된 인감으로 합니다
- 마. 구입약품 목록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처방별기준가격표”중 별첨의 56개품목으로 합니다.
-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05년 12. 31일까지로 합니다.
- 사. 2005 옥천군보건소 한방의약품 구입목록은 응찰 희망업체에서 요구시, 즉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공합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732-4734, 730-2102)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음성군공고 제2005-353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05년 7월 1일
음 성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음성군 대소면, 삼성면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 [하수도:하수관] 사업
 - 명칭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하수관 설치
3.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74,061m²(점용면적 11,430.4m²)
 - 연장 : 21.16km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 음성군수
 - 주 소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21-1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07. 2. 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불임참조
7. 열람기간 및 장소 : 2005.7.2~2005.7.22(음성군청 지역개발과)
8. 기타 : 기타 관련서류는 음성군청 지역개발과(043-871-3541~5)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중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기 타

◎ 충청북도교육청고시 제2005-3호

2005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7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		비 고
			금 액	비율	
합 계	1,244,463,555	1,157,956,559	86,506,996	7.5	
1. 국가부담수입	1,028,501,792	966,571,839	61,929,953	6.4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24,683,771	841,847,722	182,836,049	21.7	
- 지방교육양여금	0	122,441,937	△122,441,937	△100.0	
- 국고지원금	3,818,021	2,282,180	1,535,841	67.3	
2. 일반회계부담수입	94,470,913	93,028,553	1,442,360	1.6	
- 법정전입금	94,176,000	92,954,640	1,121,360	1.2	
- 비법정전입금	394,913	73,913	321,000	434.3	
3. 자 체 수 입	94,975,436	98,356,167	△3,380,731	△3.4	
- 재산수입	1,346,980	818,292	528,688	64.6	
- 입학금및수업료수입	26,171,915	31,011,365	△4,839,450	△15.6	
- 사용료및수수료수입	1,331,960	932,110	399,850	42.9	
- 잡 수 입	6,124,581	5,594,400	530,181	9.5	
- 이 월 금	60,000,000	60,000,000	0	0.0	
4. 지방교육채	26,515,414	0	26,515,414	100.0	
5. 주민(기관등)부담 수입및기타	0	0	0	0.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		비 고
			금 액	비 율	
합 계	1,244,463,555	1,157,956,559	86,506,996	7.5	
1. 학교교육	316,828,668	266,908,148	49,920,520	18.7	
- 유치원	10,209,884	9,999,174	210,710	2.1	
- 초등학교	155,368,460	138,661,947	16,706,513	12.0	
- 중 학교	77,551,482	59,817,675	17,733,807	29.6	
- 고등학교	68,540,422	53,731,335	14,809,087	27.6	
- 특수학교	4,914,212	4,464,901	449,311	10.1	
- 기타학교	244,208	233,116	11,092	4.8	
2. 평생교육	3,143,440	2,140,566	1,002,874	46.9	
- 평생교육	3,143,440	2,140,566	1,002,874	46.9	
3. 급여관리	844,547,494	822,654,318	621,893,176	2.7	
- 급여관리	844,547,494	822,654,318	21,893,176	2.7	
4. 교육행정	60,768,834	43,463,484	17,315,350	39.8	
- 교육위원회	448,813	438,833	9,980	2.3	
- 본 청	23,416,729	18,176,739	5,239,990	28.8	
- 지역교육청	7,029,532	6,112,349	917,183	15.0	
- 교육지원기관	29,873,760	18,735,563	11,138,197	59.4	
5. 기타경비	19,165,119	22,790,043	△3,624,924	△15.9	
- 지방채상환	11,194,741	9,697,897	1,496,844	15.4	
- 예 비 비	7,980,378	13,092,146	△5,111,768	△39.0	

◎ 충청북도교육청공고 제2005-105호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

1. 조례명 :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제정이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의 등 위원회 참여 비율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학교보건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771호, 2005. 3.31)됨에 따라,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교육청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2조, 제6조)
- 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및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13~17인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 (안 제3조)
- 다. 정화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심의 의결된 사항을 교육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안 제7조)

라. 정화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안 제10조)

마.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6.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교육감(참조 : 평생교육체육과장, 전화 290-1294, FAX 291-8927)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를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학교보건법”을 “「학교보건법」”으로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해 교육청 소속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회무를 통리”를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로 한다.

제6조 내지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심의사항) 정화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의 여부
2.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및 결과보고) ①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심의 의결된 사항을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중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간사는 학교환경위생정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학교환경위생정화 업무담당자가 된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정화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정화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학교보건법</u>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u>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u>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치) 충청북도교육감 소속하에 <u>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u>(이하 "도정화위원회"라 한다)를, 하급교육청교육장 소속하에 <u>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u>(이하 "교육청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3조(구성) ①각 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도정화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의 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유지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수의 1/2이상은 학부모 이어야 한다. ③교육청정화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당해 교육청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의 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유지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수의 1/2이상은 학부모 이어야 한다.</p>	<p><u>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u></p> <p>제1조(목적) ----- 「<u>학교보건법</u>」 ----- ----- ----- -----</p> <p>제2조(설치)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속하에 <u>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u>(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3조(구성) ①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해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4조(임기) 위원중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유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 ③ (생략)</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정화위원회 심의사항) ①도정화위원회는 학교환경위생정화 업무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교육청정화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의 여부 2. 기타 필요한 사항</p>	<p>제6조(심의사항) 정화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의 여부 2. 기타 필요한 사항</p>
<p>제7조(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p>	<p>제7조(회의 및 결과보고)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심의 의결된 사항을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8조 (생략)</p>	<p>제8조 (현행과 같음)</p>
<p>제9조(간사와 서기) ①정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생략)</p>	<p>제9조(간사와 서기) ①----- -----간사는 학교환경위생정화 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학교환경위생정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 data-bbox="312 555 411 589"><신설></p>	<p data-bbox="818 555 1310 712">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정화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5-87호

도로사용개시(폐지)에관한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사용개시(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인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34호선 (당진~영덕)
3. 사용개시구간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건송리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건송리까지(0.35km)
4. 사용폐지구간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건송리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건송리까지(0.20km)
5. 중요경과지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건송리
6. 전용구간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건송리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건송리까지(0.35km)
7. 중용구간 : 부터 까지 (km)
8. 개시(폐지)일시 : 2005. 6. 20
9. 비 고 : 도면은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전화:043-542-2342)에 비치되어 있음.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